공고 제 58 호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6년 11월 16일

당하동장 인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김 *현	김 *현 1980-09-16	인천광역시 검단구 원당대로608번안길 (당하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6-11-16
정 *은	정 *은 1992-03-16	인천광역시 검단구 원당대로608번안길 (당하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6-11-16